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록				
일 시	2023.3.6.11:30~14:00		장 소	요양원장실
출석현황 재적위원 5명(최영관,박상훈위원 불참), 간사1명				
위원	위원장 김연태, 위원 목인석, 위원 신경옥, 위원 박원필, 간사 김병태			
안건 및 결과				
안건	1) 심의.의결사항 ①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1차추경(안), ③후원금품 사용계획(안) 2) 기타 검토 사항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종사자 고충관리			
회의내용				
☐ 개회 위원장 김연태 :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회의록 낭독 위원 박원필: 전회의록 검토 후 별 문제 없다고함				
☐ 심의사항 제1안건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제안배경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운영에 관한 심의사항 중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금번에 입소어르신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에 대한 교육으로 어르신 중심의 시설이 되고자 요양원장 인권과 복무관리 강화지시를 하였습니다.				
☒ 신경옥 위원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교육, 자체 예방활동 등을 철저히 하더라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규정에 의한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이 있고, 지침이 있음으로 지시사항 위반 관련자는 징계, 계약만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 목인석 위원 : 종사자간에 권리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이 없는지요. 또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노인인권 및 학대에는 경미한 사안은 없으며, 유형별 사례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노동조합에 노인인권 교육협조, 원장 지시사항 등이 공문서로 협조요청 등 시설에서의 조치는 완벽하게 조치되었다고 판단되며, 요양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신경옥 위원 : 요양원장지시사항이 잘 지켜 지는지요? 특히 야간에는 수면실을 활성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사자 스스로 권익도 지키고, 복무지침도 지켜야 합니다.				
☒ 요양원장 :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				

○ 목인석 위원 : 야간과 공휴일에는 요양원장과 부실장들이 조를 편성하여 요양원 확인실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원장 : 네, 지금도 주말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겠습니다.

○ 신경옥 위원 : 종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르신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사자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급여서비스 제공과정과 복무지침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 요양원장 : 잘 알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 확인조치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법과규정에 의해 조치하는 것에 동의. 제청하시어 행정절차에 의하는 것에 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건은 통과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제2안건: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2022년도 결산추경)

☐ 제안배경

'2023년도 대한간호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인 대한간호노인요양원 사업운영계획(안)을 연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에 근거하여 '2022년 결산 및 추경(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후 투명한 예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신경옥 위원 : 입소자가 현재대로 100%유지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급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2022년 결산결과에 동의합니다.

○ 목인석 위원 : '2022년도 결산서에 동의하며 결산을 반영한 '2023년도 1차 추경안에 동의합니다. 종사자들이 노력하여 요양원 신뢰도를 높여서 입소자가 찾아오는 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필위원 : 네 입소자가 평균 98명이 되어야 요양원 운영이 원활합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타 요양원에 비해 높아서 출연기관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금교섭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요양원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직원이 적응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 중에 소수의견으로 기존근무자들이 연장근로가 줄어 든다는 의사표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 신경옥 위원 : 요양원들의 사정이 어려운데 예산서에 법인지원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 요양원장 : 최초예산편성시 '2021년부터 2년간 법인에서 1억5천5백만원을 받아서 '2023년도에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인건비등이 제한되어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안건 : 후원금품 사용계획(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녹십자(주)로부터 1회용 마스크를 후원 받음 , 후원품의 시효기간이 '2023년8월 만료되어 동기기간내 사용량보다 많은 량의 마스크를 받음으로 소요판단 후 잉여품에 대해 지역 유사기관이 요양시설, 재가시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 박원필위원 : 마스크 후원량은 많으나 사용기한이 2023년8월말로 6개월내에 모수 사용하기란 불가 합니다. 따라서 요양원 사용량을 제외하고 지역 유사기관이 요양시설, 재가시설, 지역사회 보

장협의체 등에 확인후 필요하다면 재분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목인석 위원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노인정등 집합시설에 보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 신경옥 위원 : 지역 유사기관이 요양시설, 재가시설에도 연락하여 필요량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시효기간내 사용할 수량을 제외하고 사용가능기관에 지원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목인석 위원 : 좋은 일입니다. 잉여량을 사용 않으면 폐기해야 됴므로 활용도 측면에서 국가도 이익임으로 제청합니다,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요양원장 : 네, 잘알겠습니다.

□ 기타

◆ 노인인권 : 코로나로 인해 실제 운영지침을 상이함으로 보호자님들 일부는 요양실에 올라가고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한됩니다

- 목인석 위원 : 언제쯤 요양실에 갈수 있을까요
- 요양원장 : 새로운 지침이 오면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경옥 위원 : 얼마나 기다려야 될것으로 판단되는 지요, 어르신 생활모습을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박원필위원 : 네, 지침과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목인석 위원 : 보호자분들은 궁금할것이니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특히 보호자 회의도 있고 하니 빠른 시간에 실시 했으면 합니다.
- 요양원장 : 네 . 보호자분들이 요양실을 방문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고충처리: 노동조합 교섭

한국노총(대표노조)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바 단체협약서에는 근로면제시간은 양개 노조가 협의해야 되고, 징계관련조항은 취업규칙이 있음으로 협약서의 용어 수정이 일부 필요한바 노무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협약은 진행중이며, 시설과 노조원 사이에 근무지침 등의 무이행에도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하겠습니다

- 목인석 위원 : 쉽지는 않겠지만 어르신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 신경옥 위원 : 어르신에게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르신이 있어야 요양보호사가 있는겁니다. 급여서비스 질 향상 대책을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나요?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합니다.
- 요양원장 : 염려에 대해 잘 알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요양원장 : 금일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논의사항은 시설운영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